

1. 개정이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대학별 간접비 고시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하고, 2023년도 개정 사항 중 일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회의비 사용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안 부칙)
- 나. 대학 간접비 고시비율 변경(안 [별표 6])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4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부칙 단서 중 “제87조제5항은”을 “제25조제4항은 2024.12.1.부터 시행하고, 제87조제5항은”으로 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23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8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7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26
	한국기계연구원	13.7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7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1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65
	한국식품연구원	21.4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2.09
	한국원자력연구원	24.22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한국재료연구원	10.91
	한국전기연구원	11.8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5.10
	한국천문연구원	26.0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0.6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89
	한국한의학연구원	23.8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8.3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1.00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7.96
	한국화학연구원	20.0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부설기관 (7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5.0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5.34
	극지연구소	15.95
	녹색기술센터	13.43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4.82
	세계김치연구소	21.42
	안전성평가연구소	16.89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특정연구기관 (13개)	광주과학기술원	23.08
	기초과학연구원	5.0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5.45
	울산과학기술원	27.2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51
	한국과학기술원	21.93
	한국과학창의재단	17.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3.4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33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한국세라믹기술원	16.2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0.43
	한국원자력의학원	28.7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6.94
특정연구기관의 부설기관 (5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5.0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4.88
	고등과학원	19.32
	나노종합기술원	15.09
	한국뇌연구원	20.54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6개)	ECO융합섬유연구원	14.56
	건설기계부품연구원	14.93
	다이텍연구원	11.83
	중소조선연구원	20.42
	한국광기술원	20.28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4.65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6.80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20.52
	한국섬유소재연구원	14.76
	한국신발피혁연구원	28.60
	한국실크연구원	5.00
	한국정보기술연구원	5.00
	한국자동차연구원	18.66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2.05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3.02
	한국패션산업연구원	5.00

4. 대학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가천대학교	26.38	국립한국해양대학교	20.92
가톨릭관동대학교	22.94	국민대학교	20.04
가톨릭대학교	25.55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7.43
강남대학교	14.54	극동대학교	5.19
강릉원주대학교	22.86	금오공과대학교	25.28
강원대학교	23.25	나사렛대학교	16.33
건국대학교	30.14	남부대학교	24.13
건양대학교	28.33	남서울대학교	30.13
경기과학기술대학교	15.52	단국대학교	23.90
경기대학교	21.06	대구가톨릭대학교	28.41
경남대학교	26.68	대구대학교	24.46
경북대학교	26.55	대구한의대학교	25.24
경상국립대학교	22.40	대전대학교	23.15
경성대학교	20.14	대진대학교	30.13
경운대학교	10.48	덕성여자대학교	29.96
경인교육대학교	13.15	동국대학교	25.61
경일대학교	20.99	동덕여자대학교	22.65
경희대학교	23.78	동명대학교	25.46
계명대학교	23.64	동서대학교	23.10
고려대학교	23.98	동신대학교	21.27
고신대학교	29.09	동아대학교	26.09
공주대학교	24.92	동양대학교	11.76
광운대학교	26.72	동양미래대학교	5.19
광주대학교	20.31	동의대학교	21.76
광주여자대학교	5.19	명지대학교	29.34
국립군산대학교	20.58	명지전문대학	5.19
국립암센터국제암 대학원대학교	12.98	목원대학교	28.74
국립한국교통대학교	18.70	목포대학교	15.25
목포해양대학교	18.30	연세대학교	26.96
배재대학교	27.68	영남대학교	24.38
백석대학교	28.21	영산대학교	15.51
부경대학교	23.02	용인대학교	12.62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부산가톨릭대학교	24.17	우석대학교	28.13
부산대학교	20.65	우송대학교	28.42
부산외국어대학교	29.09	울산과학대학교	7.28
부천대학교	15.32	울산대학교	21.53
북한대학원대학교	5.19	원광대학교	25.91
삼육대학교	32.10	위덕대학교	16.39
상명대학교	27.63	육군사관학교	9.98
상지대학교	29.09	울지대학교	21.19
서강대학교	29.87	이화여자대학교	27.54
서경대학교	21.93	인덕대학교	18.3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7.86	인제대학교	22.20
서울교육대학교	11.88	인천대학교	26.30
서울대학교	24.69	인하공업전문대학	19.91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25.54	인하대학교	27.40
서울시립대학교	26.77	전남대학교	22.50
서울여자대학교	20.11	전북대학교	19.84
서원대학교	27.23	전주대학교	27.00
서일대학교	14.03	제주국제대학교	21.42
선문대학교	27.62	제주대학교	24.89
성결대학교	5.19	제주한라대학교	5.19
성공회대학교	9.54	조선대학교	26.93
성균관대학교	22.93	충부대학교	21.27
성신여자대학교	29.96	중앙대학교	23.34
세명대학교	20.72	중원대학교	31.24
세종대학교	25.11	차의과학대학교	29.74
수원대학교	22.30	창신대학교	18.21
숙명여자대학교	24.69	창원대학교	23.84
순천대학교	19.42	청운대학교	20.32
순천향대학교	21.42	청주대학교	12.59
송실대학교	26.22	춘천교육대학교	14.22
신라대학교	27.84	충남대학교	22.56
아주대학교	25.99	충북대학교	22.04
안동대학교	19.36	평택대학교	5.19
안양대학교	23.80	포항공과대학교	23.19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한경국립대학교	24.78	한동대학교	24.54
한국공학대학교	20.98	한라대학교	20.32
한국교원대학교	18.16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8.2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8.32	한림대학교	18.30
한국농수산대학교	17.69	한밭대학교	26.3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19	한서대학교	29.8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6.60	한성대학교	25.53
한국예술종합학교	15.16	한신대학교	10.63
한국외국어대학교	29.34	한양대학교	26.11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32.20	한양여자대학교	13.94
한국전문문화대학교	13.81	협성대학교	19.47
한국체육대학교	20.50	호남대학교	21.92
한국항공대학교	29.96	호서대학교	28.69
한남대학교	23.91	홍익대학교	5.19

5. 기타비영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기타비영리기관 (7개)	고등기술연구원	17.51
	삼성서울병원	21.90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8.03
	한국선급	19.8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9.67
	한국파스퇴르연구소	29.22
	한국조명ICT연구원	21.5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